

學生福祉의 기본방향과 과제

曹 興 植

(서울大 社會福祉學科)

1. 머리말

현재 우리 대학사회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대학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대학 구성원 전체에 대한 福祉政策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더욱 질높은 대학교육을 정립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학내 요소로는 학생, 교수, 행정직원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양적으로 많은 집단은 학생집단이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는 대상자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변혁을 위한 주체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장래의 고급인력이 되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당국이 이들에 대한 복지문제를 등한시해 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大學生 福祉의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학생복지의 과제를 살펴보는 데 주목적을 둔다.

2. 學生福祉의 意味

변화가 많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생활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 교육은 필수적이다. 교육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직업의 확보, 경제적 안정, 원만한 사회생활 및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특히 대학은 국가발전을 위한 고급교육장으로서 미래의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지식을 습득하도록 전수시킴(교육)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그 지식을 개발하는 방법(연구)에 대하여 충실히 훈련받게 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곳이다. 그리고 사회의 제반 문제해결을 위해 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러한 교육·연구·사회봉사를 흔히 대학의 3대 기능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능수행을 충분히 잘 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대학의 내부나 외부에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냐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여 복지적 대책이 주어지느냐 하는 점이다.

福祉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회이념으로서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기대되는 안정, 조화, 평화, 생활내용의 충족, 인격의 발달 등과 같은 행복의 이상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는 행복이나 행운 그 자체라기보다는 행복이나 행운 등을 갖추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方

向'이나 '행복추구를 위해 살아가는 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는 우리들의 생활이 향상 안정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욕구의 충족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시·공을 초월하여 여러 가지 수단이 고안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다양하고 만족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복지는 多次元的 性格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한 개인의 복지를 고려할 경우에도 거기에는 복합적인 구성요소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복지(건강), 물리적인 복지(풍요·번영·부), 정신적·심리적인 복지(정신적 안정·건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복지의 의미를 대학의 성원 중에서 學生에 적용시켜 볼 때 모든 대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교육·연구·사회봉사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生活條件 전반에 걸친 복지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일상생활과 유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내에서 학생들이 대학의 주기능들을 잘 수행하기 위한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의 다양한 제도내에 社會福祉機能을 수용함으로써 오늘날 대학은 새로운 면모를 가져야 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학생복지가 갖는 의미는 대학생 개개인이 대학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생활상의 문제와 요구에 호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공·사기관과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및 기타 제반 활동을 일컫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學生福祉에 대한 대책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原則에 입각해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부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은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둘째, 대학은 어느 기관보다도 우선 학생복지에 적절한 사회적 대책을 보장한다. 셋째, 각종 사회적 대책은 학생 개개인의 욕구에 호응하게 되지만, 학

생도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아무튼 학생복지란 학생이 대학에서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제가 되는 복지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즉각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實踐意志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3. 學生福祉의 基本方向

앞에서 언급한 학생복지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학생복지의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생복지의 主體는 대학당국만이 아닌 사회(국가)와 학생 등 3자가 공유해야 한다.

대학·사회·학생 간에는 제각기 복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어느 한 편에서라도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될 때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우선 大學은 학생들을 교육·연구·봉사하게 하는 제 1차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후견인으로서 학생의 생활방식과 행동기준을 정해주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권리에 못지 않게 責任을 遂行할 의무가 따르는데 재정적 지원, 신체적 보호, 정서적 안정, 연구여건의 마련이나 그 밖에 광범위한 교육·지도·감독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대학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만 주장할 뿐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데서 슬한 갈등과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국가) 역시 학생을 포함한 대학의 전반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권리와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社會는 학생에 대한 대학의 복지대책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혹은 학생이 충분히 교육·연구·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회적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이에 관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학생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복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당국과 항상 有機的 關係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학생은 스스로 복지대책의 對象者(소비자)임과 동시에 자신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제반 서비스 대책 마련의 主體者가 됨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학생은 대학에 들어올 때부

더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독자적 권리를 지니게 되며, 아울러 대학과 사회가 요구하는 정당한 기대나 합리적 여망을 받아들여야 하고, 개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발전시켜야 하며,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책임의식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복지 대책에는 普遍性和 選別性的의 原理가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학생복지 활동분야는 특별히 어려운 학생이나 일부 선별된 대상에 대한 보호사업이 주가 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생복지의 대책에는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리가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普遍性이라 함은 거시적·총괄적·기회균등적인 것을 말하며, 選別性이라 함은 시정적·개별적·열등취우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다. 전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대책이 수립됨을 말하고, 후자는 특별한 요구나 대책을 필요로 하는 일부 학생에게 집중적인 복지대책이 강구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별장학금 제도는 선별성의 원리에 가깝고, 생활복지조합 제도는 보편성의 원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점차 예방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성의 원리가 선별성의 원리와 함께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학생복지의 제반 대책은 包括的이어야 한다.

학생도 하나의 전체성을 띤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칙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들이 건진하게 성장하도록 할 수 있다. 학생복지에 대한 제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상호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학생복지의 경우 교육과 관련된 교육내적 요소는 강조되면서도 생활복지와 같은 教育外的 要素는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러한 면은 대학의 行政組織 측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대학의 행정조직내에서 많은 부서들이 학생복지 프로그램의 조직과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는 자신들의 소관업무에만 집착할 공산이 크므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넷째, 학생복지의 방향을 대학뿐만 아니라 국

가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하는 開發的 機能 수행을 충실히 하도록 한다.

여기서 개발적 기능이란 대학당국의 단순한 제도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사회 개발의 여러 조건을 향상시키고 창조하는 일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회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의도적인 변화를 초래케 하며 국가적인 개발체제와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활동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과 지방대학, 도시와 농촌대학, 국·공립과 사립대학 등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학생복지 대책의 심각한 差別性은 개발적 기능 수행과 함께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을 단순한 교육의 대상자나 수동적인 집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학과 국가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여러 가지 기회를 대학간에 차별 없이 제공해 줄 때, 그들 각자가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학생복지를 전담할 專門人力이 배치된 전문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많은 대학들이 학생복지를 위한 대학조직의 목적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이 역할을 실제로 담당할 인력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조직 자체를 위한 행정운영에 치중할 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과 실천에 필요한 전문적 지도자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다고 하겠다. 학생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직·기구와 아울러 人力의 專門性이 요청되는 것이다. 종전에 많은 예산이 든다는 핑계로 주먹구구식이나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복지 서비스만으로는 학생들의 복잡하고도 중요한 당면문제와 요구들을 다루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학생들의 문제와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 충족되는 것은 안 되며 될 수 있는 한 많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모든 학생의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공통된 요구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이 요청되는 것이다.

4. 學生福祉의 課題

학생복지의 과제는 앞에서 언급된 학생복지의

기본방향을 전제로 하여 학생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수립될 수 있다. 현재 학생복지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學生福祉에 대한 새로운 認識

학생복지는 대학의 구성부분 중에서도 궁극적 목표인 학생들을 위한 민주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목표·방법·철학 등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대학에서 활용되는 권한·계통·책임 및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유대를 갖고 서로 지식과 기술을 나누도록 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대학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필요한 기술·지식·태도를 습득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국가적·정책적 요청에 의하여 세워진 조직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무엇이든 배우고, 연구하며, 사회에서 바람직한 가치개념을 형성할 뿐 아니라 사회에의 적응력을 넓혀감으로써 자기지향적·생산적·주체적인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데 대학의 목적이 있다고 할 때, 대학내에서 새로이 검토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학생의 身分과 權利에 관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대학차차와 관련하여 學生自治 영역은 대체로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학생의 역할로 보나, 미래의 학문연구공동체로서 우리 대학이 자리잡기 위해서라도 학생의 권리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을 단순히 교육대상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교육 및 학문연구의 主體性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이 무엇보다도 학생복지의 목표 및 방향설정과 관련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2)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開發

무엇보다도 학생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학생복지 문제는 종전의 학비조달, 후생시설 등 금전적·시설적 문제로부터 점차 연구여건의 개선, 진로문제, 개인문제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레크리에이션 문제 등

개개인에게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띤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 전체의 요구에 적합한 것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겠다. 여기서 우리 대학의 현행 학생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경제적 지원 서비스: 등록금, 생활비, 학자금 용자, 장학제도, 부직 안내 등
- ② 교육시설 서비스: 도서관, 시청각교육관, 외국어 실습장 등을 통한 서비스
- ③ 주거생활 서비스: 기숙사, 학숙·자취방을 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 ④ 교통 서비스: 학교셔틀버스 운행, 일반버스의 학교 구내까지의 연장 운행
- ⑤ 의료 서비스: 보건진료소 운영, 의료공제 실시, 정기 건강진단
- ⑥ 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심리검사, 소집단 대화 및 집단훈련, 유학상담
- ⑦ 편의시설 서비스: 식당, 구내매장, 우체국, 은행, 여행안내소, 이발소, 미용실 운영
- ⑧ 학생활동시설 서비스: 학생회관, 수영장, 노천강당, 수련장 운영
- ⑨ 서클활동 서비스: 각종 학술·공연·예술·종교·사회·매체 및 취미·교양단체 활동들의 소개와 자치활동비용 보조, 총학생회 활동의 후원
- ⑩ 학생병사 서비스: 입영연기, 병적정리, ROTC, 대학적장애비군 편성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한 서비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양적인 부족과 함께 질적 수준의 저급성을 들 수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 대학당국이 이들 서비스에 드는 재원 확보와 함께 지역사회 및 국가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大學間 서비스 隔差의 解消

학생복지 서비스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소재지역에 따라 대학간 격차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균등한 복

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학생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안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적어도 학생복지에 대한 最小限의 保障(student's minimum)이 제 1차적으로 國家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최소한의 보장이 확립된 이후에는 대학당국이 다른 대학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특히 학생복지에 대한 투자를 시설 설치 중심의 너무 의형적인 데 치중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4) 專門 機構·人力的 확보

학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구 설치와 함께 이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점점 대학사회는 학생과 관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많은 요구를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인 바,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와 인간 행동과 생활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을 가진 인력이 학생복지 업무를 맡아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학생복지를 담당하게 될 전문기구에 필요한 인력은 기존의 일반행정요원과 함께 복지대상자의 실태 파악, 서비스 제공의 적격성(eligibility) 여부 결정, 서비스의 우선순위 결정, 서비스 전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일반 학생복지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생복지에 대한 인식, 즉 단순한 시설 설치 및 물질적 제공이 학생복지의 전부라는 사고가 불식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대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5) 地域社會와의 協助體制 확립

오늘날 대학교육 기회의 확대와 전문화의 요구는 대학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지적기능의 개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갖는 자신의 개인적 고민, 나아가서는 사회의 불평등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

구는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지역사회 또는 사회제도적 장치와의 관계 개선 및 협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사회봉사에 대한 책임 능력을 개발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학은 점점 대학의 기능과 시설에 대한 지역공개, 시설운영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시설처우의 사회화에 접하고 있다. 이러한 大學의 社會化는 사회변천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학생복지의 전반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 내용에서 상당한 변화를 초래케 하는데, 먼저 대학의 시설면에서 지역사회 개방에 따른 장소 부족문제, 시설운영의 비합리성, 그리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미흡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학의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결국 대학의 부족한 시설 확충이나 운영 합리화를 위한 地域社會의 責任을 증대해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학생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갖고 있는 사회봉사의 기능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의 해결에 대한 關心과 參與를 통해 실제 문제해결 과정에서 주체적인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미래사회의 지도자적 소양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학생복지 서비스가 마련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학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制度的 裝置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학생들의 지역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의 主體的 參與에 대한 방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5. 結 論

학생복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시대적 변화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요구와 의식이 과거의 수혜적·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 주체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학생의 권익을 찾겠다는 福祉權 意識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운동의 경향이 대학 외부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학내부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복지문제에 점차 관심을 고취시켜 대중적 연대운동의 연결고리로서 학생복지를

이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학생들을 단순한 救護對象集團으로 간주하던 시각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사실 학생복지 문제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데서부터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복지 문제가 대학구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 教育構造 속에서 재생산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대학을 포함한

전체 사회 속에서 教育機會와 質의 配分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학생복지의 문제는 이를 전개시킬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늘 존재했다기보다 대학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意志가 없기 때문에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학생복지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학생들의 福祉運動에서부터 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점차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